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활용 근거 마련 등〉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30호)

2024.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2
IV . 검토의견	3
1. 지역중소지상과방송발전기금 활용 근거 마련 등(안 제7조 등) ..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훈기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4. 9. 6.

다. 회 부 일 : 2024. 9.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 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방송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은 기금의 약 2% 남짓으로, 각 방송사당 연간 1억원 내외에서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해 지급되는 등 지역방송발전에 필요한 기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운용되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1조).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기위원이 대표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지역중소지상과방송발전기금 활용 근거 마련 등(안 제7조 등)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29)」에 따라 “지역중소지상과방송발전기금”(이하 “지역중소기금”)이 조성·운용될 경우, 해당 기금의 재원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안 제7조제4항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재원을 지역중소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안 제7조제5항은 지역중소기금의 지원을 받은 지역방송사업자는 지정 목적 외의 용도로 해당 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 안 제7조제6항은 현행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같이 지역중소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임.
- 안 제11조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직무에 지역중소기금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발굴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① ~ ③ (생략)	제7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④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재원은 「<u>방송통신발전 기본법</u>」에 따라 조성·운용되는 <u>방송통신발전기금</u>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신설> ⑤ <u>방송통신발전기금</u>의 지원을 받은 지역방송사업자는 지원 당시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지원받은 <u>방송통신발전기금</u>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방송통신발전기금</u>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u>방송통신발전기금</u>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1. ~ 3. (생략) ⑦·⑧ (생략) 제11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 4. (생략) 5. <u>방송통신발전기금</u>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발굴 6.·7. (생략) ② ~ ④ (생략)	④ ----- -----<u>다음 각 호의 기금</u> -----. 1. 「<u>방송통신발전 기본법</u>」에 따라 조성·운용되는 <u>방송통신발전기금</u> 2. 「<u>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u>」에 따라 조성·운용되는 <u>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u> ⑤ <u>제4항에 따른 기금</u>의----- -----<u>기금</u>을 -----. ⑥ ----- -----<u>제4항</u> <u>에 따른 기금</u>----- --. <u>기금</u>----- -----. 1. ~ 3. (현행과 같음) ⑦·⑧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u>방송통신발전기금·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u>----- 6.·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 의견

○ 현행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 제7조¹⁾는 지역방송발전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계획에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계획의 수행을 위한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법 제7조제1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지역방송발전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재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²⁾에 따라 조성·운용

1)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방송의 언론자유 증진과 자율성 보장
2. 지역방송 발전지원의 기본방향
3.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및 연도별 지원계획
4. 지역방송 발전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지역방송의 경영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방송 광고체계 개선방안, 광고·편성·협찬 관련 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8. 지역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 및 국내외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재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운용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재원에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29)」이 통과될 경우 설치·운용되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이하 “지역중소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 현재 법 제2조제1항제2호3)에 따라 지역방송을 행하는 지역방송 사업자는 2024년 9월 기준 지역 MBC 16개사, 청주방송 등 지역민방 10개사, 경인방송 등 지역라디오 3개사 등 총 29개사가 있음.

<지역방송사업자 현황 >

구분		방송사업자명
지역방송 사업자 (29개사)	지역MBC (16개사)	춘천MBC, MBC강원영동, 원주MBC, MBC충북, 대전MBC, 안동MBC, 대구MBC, 포항MBC, 울산MBC, MBC경남, 부산MBC, 전주MBC, 광주MBC, 목포MBC, 여수MBC, 제주MBC
	지역민방 (10개사)	G1, 청주방송, 대전방송, 티비씨, 울산방송, KNN, 전주방송, 광주방송, 제주방송, OBS경인TV

-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3)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방송”이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을 말한다.
 2. “지역방송사업자”란 지역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구분		방송사업자명
	지역라디오 (3개사)	경인방송, 부산영어방송재단, 광주영어방송재단

주: 2024년 9월 기준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방발기금을 통해 지역방송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은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2021년 40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45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지역방송사업자 지원 사업(방발기금) 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4,030	4,530	4,530	4,530
▪ 프로그램 제작 지원	3,400	3,900	3,900	3,900
▪ 지역방송 유통 활성화	360	360	360	360
▪ 지역방송 교육 및 인력양성	270	270	270	270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한편, 방통위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024년 1월에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2024년~2026년)”을 수립하였는데, 동 계획은 지역방송의 현황에 대해,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위기극복 역량은 약화되었다고 분석하였음.⁴⁾

-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22년의 지역 MBC(16개사)의 총매출액은 2,772억원에서 2,780억원으로

4) 방송통신위원회, 2024.1.24.,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2024년~2026년)」, pp.5~9.

8억원 증가하였는데, 방송사업매출은 증가(2,349억원→2,469억원)하였으나, 광고매출(1,319억원→1,214억원)과 기타사업매출(423억원→311억원)은 감소하였음.

- 2018년 대비 2022년의 지역민방(10개사)의 총매출액은 3,239억원에서 2,956억원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지역민방도 방송사업매출은 증가(2,323억원→2,453억원)하였으나, 광고매출(1,198억원→1,107억원) 및 기타사업매출(916억원→503억원)은 감소하였음.
- 또한, 자체 편성 비중 대비 제작비 감소로 콘텐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방송시장 성장 부진으로 지역방송 위기 극복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부의 지역방송 규제 완화와 재정적 지원 등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서술하고 있음.

○ 다만, 해당 계획에서는 이러한 지역방송의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재정 지원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고, “전략 4. 공공성을 위한 재정 기반 강화”를 위해 “과제 4-1. 신유형 플랫폼 활용 지원”과 “과제 4-2. 광고 규제 합리화 등 재정 기반 강화”가 제시되었음.⁵⁾

○ 개정안은 지역방송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방발기금 지원이 기금의 약 2% 남짓에 불과하고, 각 방송사당 연간 1억원 내외에서 지역방송에의 발전을 위해 지급되는 등

5) 방송통신위원회, 2024.1.24.,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2024년~2026년)」, pp.34~39.

지역방송발전에 필요한 기금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29)」에 따라 지역중소기금이 설치된다면 해당 재원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지역방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계 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먼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분야 정부광고 수수료를 재원으로 활용한 지역중소기금을 근거에 명시하여 지역성·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원 근거인 지역중소기금 신설과 관련된 사항은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수용 입장임.

○ 반면, 기획재정부는 지역중소기금을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14조⁶⁾ 기금 신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기금 신설

6)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은 정부 재정운용 방향과 배치되므로, 신중검토 필요 입장⁷⁾임.

- 참고로, 개정안은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 과방위에서 심사될 예정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7) 기획재정부 검토의견

※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신설을 위한 지역방송 지원 4법에 대해 동일한 의견 제출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국가재정법(앞선 3법 개정을 전제로 함)

【 검토의견: 신중검토 】

□ 국가재정법 제14조 기금 신설 기준에 미부합, 신중검토 필요

국가재정법 제14조(기금신설 심사 기준)

- ①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 ②사업의 특성상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 ③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
- ④기존 회계·기금보다 새로운 기금으로의 사업 수행이 더 효과적일 것

① (연계성) 중앙정부·지자체 등이 의뢰하는 정부광고의 수수료로 지역·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 지원시 재원·사업간 연계성 미흡

- 他 방송사업자(중앙지상파, 위성방송 등) 및 他 정부광고 매체(뉴미디어, 전광판, 인쇄매체 등)에 대한 역차별 발생 우려

② (신축성) 기금 신설은 지역·중소방송 지원을 위한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신축적인 사업추진과 관련 없음*

* 현재 지원중인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 또한 일정규모로 기금계획변경이나 이월없이 운영중(²¹40억원, ²²45억원, ²³45억원, ²⁴45억원)

③ (안정성) 신설 기금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해 문체부·방통위 간 의견 대립중**으로 재원조달 안정성 결여

* 언론진흥재단(문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 정부광고업무 대가로 징수하는 수수료 중 방송통신 매체 관련 수수료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방통위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로 이관하여 신설기금의 재원으로 활용

** (문체부) 특정 방송사의 방송광고를 판매대행하는 코바코가 방송매체 전체에 대해 정부광고를 대행할 경우 공정성·중립성 훼손 우려 등 수용관련 입장
(방통위) 지역·중소방송사 지원 강화 취지에는 동의하나 현재 방발기금으로 관련 사업을 既 추진중인 만큼 기금 신설은 신중검토 필요

④ (신설 필요성) 지역·중소언론 자립 및 보도 공정성 유지를 위해 국가 재정지원 은 점차 축소함이 적절하나,

- 지역·중소방송의 공익적 기능(지역성·다양성 구현 등)을 고려해 최소 수준으로 지원중이며,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신설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24년 45억원, '14~) 사업을 통해 지역밀착형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인력 양성 지원

□ 정부는 기금존치평가 등 기금운영의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등을 운영중 → 실익이 크지 않은 기금 신설은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과 배치되므로 신중검토 필요

- 종합해보면,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지역중소기금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를 통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방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취지와 지역성·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하는 개정취지에 동의하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지역중소기금 신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방통위의 입장 및 지역중소기금 신설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신설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226